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31호 2019. 12. 31.(화)

거창 후훈 거창

선결	기관의 장

조 례

제255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제2553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 10
제2554호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제2555호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
제2556호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제2557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제2558호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48
제2559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0
제2560호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74
제2561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80

규 칙

제1275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84
제1276호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86
제1277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 90
제1278호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98

고 시

제2019-148호 도로명주소 고시 ····· 106
제2019-149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108
제2019-150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109

공 고

제2019-1612호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사항 공고 ····· 110
제2019-1613호「연곡소하천 정비공사」보상계획 열람 공고 ····· 112
제2019-1619호 2019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원 채용 공고 ····· 115
제2019-1620호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공고 ····· 120
제2019-1624호 거창군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임대료 공고 ····· 121
제2019-1628호 공시송달공고 ····· 122
제2020-2호 토석(토사)채취 허가 신청 주민 공람 공고 ····· 123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18호 2019년도 제4회 거창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124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2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55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을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으로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정 수령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 수령자에게 알리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존 제5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안전부와"를 "인사혁신처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기존 별표) 비고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제4호(기존 제5호) 중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 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으로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정 수령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 수령자에게 알리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생 략)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현행과 같음)

[별표 1] <신 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지급 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나. 지급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142

제 출 일	2019. 11. 2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현행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엄격한 여비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대상·방법을 정함(안 제2조, 별표 1)

나.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5조)

1) 여비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

2) 여비 부정 수령 행위 명시

3) 환수절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공무원 여비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15.~1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2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553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증가 지원사업)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과 출산 지원
   가. 출산 축하금
   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다. 임신축하 기념품 등
2.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 양육지원금 지원 등
3.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세대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4. 전입세대의 정착 지원
가. 전입정착금
나. 빈집정비 지원
다. 전입 고등학생·대학생 장학금·학자금, 대학생 생활관비 등 지원
5. 그 밖에 군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
가. 국적취득자 지원
가.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대상·금액 등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2조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이중지원 제한)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수혜금액만큼 빼고 지급한다.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

제6조(보상) 군수는 인구증가 지원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유관기관·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중일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출산장려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증액 지원, 전입정착금 증액 지원,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

나. 관련조문 : 제2조(인구증가 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2,139	2,139	2,139	2,139	2,139	10,695

3. 관련 의견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증액 지원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전입정착금 증액으로 유동인구 정착을 지원하며, 청년의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청년 유출 문제 해결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항 목	상 세 내 역
1. 출산축하금 지원 : 450백만원	◦ 첫째 1,000천원×100명=100,000천원 ◦ 둘째 2,000천원×100명=200,000천원 ◦ 셋째 이후 3,000천원×50명=150,000천원
2. 양육지원금 지원 : 1,300백만원	◦ 첫째 100천원×100명×20월=200,000천원 ◦ 둘째 100천원×100명×20월=200,000천원 ◦ 셋째 이후 300천원×50명×60월=900,000천원
3. 전입 정착금 지원 : 189백만원	◦ 1인 세대 100천원×900세대=90,000천원 ◦ 2인 세대 200천원×200세대=40,000천원 ◦ 3인 세대 300천원×80세대=24,000천원 ◦ 4인이상 세대 500천원×70세대=35,000천원
4.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 : 200백만원	◦ 1,000천원×200명

작성자 :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143

제 출 일	2019. 11. 2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본질적인 사항은 조례로 그 대강을 정하여 군민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고,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기준 등 기술적 사항이나 수시로 변하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여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내 인구증가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2조)

1) 임신과 출산 지원

2)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

3)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세대 지원

4) 전입세대의 정착 지원

5) 그 밖에 군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나. 지원대상의 세부기준 및 신청·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함(안 제2조 제2항, 제3조)

다. 이중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4조)

1) 같은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만큼 빼고 지원

라. 지원 중단 및 환수를 정함(안 제5조)

마. 인구증가 유공자, 단체 등에 보상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재정법」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2,139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29.~11. 1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2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554호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을 “상설전시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상관”을 “영상관, 나무상상놀이터”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4조제1호에 따른 기획전시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를 “제4조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2. 체험시설: 초급·중급·고급 체험장, 유아체험실, 영상관 3. 편익시설: 중정(쉼터),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4. 그 밖의 시설: 운영사무실, 야외놀이 시설 등	제4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상설전시설 2. 체험시설: 초급·중급·고급 체험장, 유아체험실, 영상관, 나무상상놀이터 3.편익시설: 중정(쉼터),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4. 그 밖의 시설: 운영사무실, 야외놀이 시설 등
제8조(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료)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기획전시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제13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8조(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료)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제13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행위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5. (생 략) 6. 반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생 략)	제12조(행위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삭 제> 6.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2]

시설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이용기준	이 용 료	비 고
체험시설	4시간	50,000원	
	1일	100,000원	
~~기획전시실~~	~~1일~~	~~100,000원~~	<삭 제>
나무상상놀이터	**10:00~11:30 13:30~15:00 15:30~17:00**	**회당 6,000원**	**1일 3번 회당 90분**

1. 체험시설은 이용시간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이용료 100,000원의 범위에서 시간당 10,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체험시설의 이용료 감경기준
   가. 5일 이상 이용: 20퍼센트 감경
   나. 10일 이상 이용: 30퍼센트 감경
   다. 20일 이상 이용: 50퍼센트 감경
3. **나무상상놀이터의 이용료 1000원 감경대상**
   가. 군에 주소를 둔 군민
   나. 20인 이상 단체
4. 체험시설은 목재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용시간동안 일반 체험이용객은 그 이용을 제한함

[별지 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인
(개인)</td><td>성명 (서명 또는 인)</td><td>생년월일 (남/여)</td></tr>
<tr><td>주소</td><td>전화번호</td></tr>
<tr><td rowspan="3">신청인
(법인)</td><td>법인 또는 단체명</td><td>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td></tr>
<tr><td>대표자 (남/여)
(서명 또는 인)</td><td>대표 전화번호</td></tr>
<tr><td colspan="2">소재지</td></tr>
<tr><td rowspan="5">신청내용</td><td colspan="2">※ [ ]에는 이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td></tr>
<tr><td colspan="2"><table><tr><td>목공체험실(초급)</td><td>목공체험실(중・고급)</td><td>기획전시실
나무상상놀이터</td></tr><tr><td></td><td></td><td></td></tr></table></td></tr>
<tr><td colspan="2">이용인원</td></tr>
<tr><td colspan="2">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td></tr>
</table>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 귀하

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일반용지 60그램/제곱미터(재활용품)]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144

제 출 일	2019. 11. 2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거창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2층 기획전시실을 나무상상놀이터로 변경·운영 계획에 따라 나무상상놀이터의 이용기준과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시설을 변경함(안 제4조)

1) 폐지 : 전시시설 중 기획전시실

2) 신설 : 체험시설 중 나무상상놀이터

나. 나무상상놀이터 이용기준 및 이용료 신설(안 별표 2)

1) 1일 3번, 회당 90분 운영 : 회당 6,000원

2) 이용시간 : 10:00~11:30, 13:30~15:00, 15:30~17:00

다. 차별규정, 용어 정비(안 제12조제1항제6호, 별지 서식)

1) 삭제 : 반려동물 동반입장 제한

2) 용어 정비 : 기획전시실⇒나무상상놀이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14.~11. 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2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555호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 걷는 길(이하 "걷는 길"이라 한다)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 및 관광객(이하 "군민 등"이라 한다)에게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민 등은 자신의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의 체험주체임을 인식하여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해당 관광자원 등을 보전·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조성·원칙 및 범위) ① 군수는 군민 등의 건강증진과 해당 지역역사·문화·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기회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걷는 길을 조성한다.

② 걷는 길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
2.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3.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존중
4.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

③ 걷는 길의 조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3. 강길, 둑길, 등산로
4. 그 밖에 국가, 경상남도 또는 군이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조성한 길

④ 군수는 걷는 길을 조성하거나 변경·폐지한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① 군수는 걷는 길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현황 및 전망
3.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운영. 이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역사·문화·자연환경 등 관광자원 홍보
   나. 올바른 걷기문화 교육
3. 군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홍보
   가. 조성 및 운영상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나.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
   다.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4. 군민 등과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
5. 거창군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 지정·운영
6. 협력체계 구축·운영
7. 걷는 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8.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명품길 지정·운영) ① 군수는 생태·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거창군 명품길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익성, 심미성,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명품길에는 군민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정배경·가치·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걷는 길의 효과적 조성 및 운영과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는 길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조성하거나 지정한 걷는 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종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104

발의일자	2019. 12. 10.
발 의 자	김종두, 이홍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의원 (인)

1. 제안이유

지역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걷는 길 조성의 목적, 적용범위, 책무 등을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걷는 길 조성의 원칙 및 범위를 정함(안 제4조)

1) 원칙 :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지역주민의 의견존중,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

2) 범위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다) 강길, 둑길, 등산로

라) 그 밖에 국가, 경상남도 또는 군이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조성한 길

다.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라. 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6조)

1)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운영

2) 전문인력의 양성

3)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4)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

5) 명품길 지정·운영

6) 협력체계 구축 ·운영 등

7) 걷는 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8)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마. 명품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 향후 사업시행 시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 산림과, 건설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2. 2.~12. 9.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2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556호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2조 중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100분의 50
2.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100분의 30

제26조,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소재지 및 시장명
3.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상남도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다만 군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제41조,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손도장을 찍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41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보험가입)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 내 점포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제1호에 해당할 경우 100분의 50
<신 설>	2.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100분의 30
<신 설>	제26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소재지 및 시장명 3.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상남도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다만 군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군·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는 매각물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경상남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삭 제>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	<삭 제>

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손도장을 찍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제41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

	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보험가입)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 내 점포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145

제 출 일	2019. 11. 2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와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규정 명확화(안 제4조)
나.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8조)
다.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감면률 기준 구체화(안 제22조)
라.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안 제26조)
마.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33조)
바.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 명확화(안 제34조)
사.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신설(안 제40조)
아.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41조)
자. 공유재산인 시장 내 점포 등의 화재보험 가입 신설(안 제4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의2, 제17조의2, 제38조의2, 제65조, 제6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1. 14.~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2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557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임산부”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이하 “임산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를 “임산부는”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 공영주차장 관리자(관리 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차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1. 주차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주차장 주변 질서를 유지할 것
2. 주차장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할 것
3.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것
4. 제복 착용 등 주차장의 관리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제8조제3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주차권”으로 “환불한다.”를 “주차요금을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잔여매수”를 “남은 장수”로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를 “남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의 자동차

제11조의2, 제13조의2,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 및 자동차 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정)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경우

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제15조의2(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① 군수는 학교, 공공기관,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등 주차관련 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이하 "임산부"라 한다) 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산부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 공영주차장 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차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1. 주차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주차장 주변 질서를 유지할 것 2. 주차장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할 것 3.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것 4. 제복 착용 등 주차장의 관리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② (생 략)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남은 장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요금의 감면) ① (생 략) ②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1.~6. (생 략)	**제9조(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1.~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의 자동차
<신 설>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 및 자동차 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정)
<신 설>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 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신 설>	제15조의2(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① 군수는 학교, 공공기관,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5조의2(부설주차장 무료개방 및 지원) ① 군수는 학교, 공공기관,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 경제교통과장 문 재 식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146

제 출 일	2019. 11. 2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군내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학교,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2, 제11조의2, 제13조의2)

1)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

2) 노외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편의시설

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나. 규제개선, 용어순화(안 제8조)

1) 주차요금 미반환규정 삭제

2) 잔여 ⇒ 남은

다.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기준 마련(안 제9조제2항제7호)

1)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부칙)

1) 지원대상 : 학교, 공공기관,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을 하는 자

2) 지원범위 :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3) 부칙에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세출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0조의2, 제12조의3, 제17조, 제21조의2

제6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상반기 20,000천원 예산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30.~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안 제9조제2항제7호)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2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558호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창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황강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이용객의 자연체험, 자연학습 및 관람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이란 거창창포원(이하 “창포원”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기반시설,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자연체험, 자연학습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포원을 통하여 황강의 수질 및 경관 개선과 댐 주변 수몰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거창창포원의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공간으로 거창창포원을 조성한다.
② 창포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남상면 창포원길 21-1에 둔다.

제6조(기능) 창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수질정화식물 식재로 수질개선 및 생태자연관광 활성화
2. 생태습지 및 생태 숲 조성으로 생물종 다양성 증대
3.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연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
5. 키즈카페 및 북카페 등 운영
6. 그 밖에 창포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관리의 위탁) 군수는 창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개원 및 휴원) ① 창포원은 매일 개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임시로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개수·보수 및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중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창포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거나 휴원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임시 휴원일 또는 변경 휴원일 5일 전까지
2.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운영중지 시작일 10일 전까지

제9조(운영·관람시간) ① 창포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로 한다.

②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체험프로그램 체험료 등) 체험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장 및 행위 제한) 군수는 창포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른 행위제한에 해당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안전 확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 후단에 따라 퇴장명령을 받고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
2. 창포원 주변에서 관람자 등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람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4. 관람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갖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3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전 5일까지 별지 서식의 창포원 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목적이 창포원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식물의 수량 등 조정) ① 군수는 창포원 내 식물 종의 다양화와 재배 밀도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물의 매각, 교환, 구입 등의 방법으로 식물의 종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식물의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물을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군 및 산하기관 등의 환경미화 등에 필요한 경우
2.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분양신청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용)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온실의 병해충 방제 등) 군수는 온실 내에 재배하거나 전시하는 모든 식물을 수시로 관찰하여 병해충방제, 거름주기, 물주기, 가지치기, 잡초제거 작업 등을 제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온실의 온도·습도 유지 등) 군수는 온실 내에서 재배하거나 전시하는 온실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온실 내의 온도, 습도, 광선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편의시설 운영) 군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물품을 대여할 수 있고,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카페, 매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키즈카페·북카페 운영시간) ① 창포원 내 키즈카페 및 북카페(이하 “카페”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키즈카페 입장마감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휴무한다.

②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카페 입장료 등) ① 키즈카페의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북카페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키즈카페의 입장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카페 위생관리) 군수는 카페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위생상태 향상 등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키즈카페 입장제한) 군수는 키즈카페 이용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 후 공공 및 안전 등을 위해 퇴장하는 경우에는 일일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창창포원 및 키즈카페 입장·행위 제한(제11조·제22조 관련)

1. 거창 창포원	가. 입장 제한	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나. 행위 제한	1)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이물질 주입 등으로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4)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무단으로 대소변을 보거나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6)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훼손하는 행위 7) 노점상 등 영업행위 8) 그 밖에 거창창포원의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키즈 카페	가. 입장 제한	1)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입장에 따른 수용인원이 입장객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될 때 3)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별표 2]

키즈카페 입장료(제20조 관련)

구분	어린이	성인
기본 2시간	3,000원	1,000원
10분당 추가요금	500원	-

[별표 3] 키즈카페 입장료 감면기준(제20조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1. 국빈·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100분의 100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자녀 또는 손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10.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 이 경우 자녀 셋 모두 해당	100분의 50

[별지 서식]

거창창포원 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남/여)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이용 시설 회의실 [ ] 온실 내 체험실 [ ] 그 밖의 시설 [ ]	
	이용 인원	
	이용 목적 및 내용	
	이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변경사항	원 래	변 경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창창포원 시설의 이용(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일반용지 60그램/밀리미터(재활용품)]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거창창포원 운영 및 관리

나. 관련 조문 : 제5조(설치 및 위치), 제6조(기능)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총 비용		931	949	967	986	1,005	4,838
세출	국비	-	-	-	-	-	-
	도비	-	-	-	-	-	-
	군비	931	949	967	986	1,005	4,838
	소계(a)	931	949	967	986	1,005	4,838

최근 5년 평균물가상승률 1.9퍼센트 반영

3. 관련 의견

가. 거창창포원의 관리 예산은 4계절 테마관광을 통한 전국단위 랜드마크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은 필요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인건비 : 414백만원

나. 일반관리비(제세공과금 등) : 379백만원

다. 재료비 : 15백만원

라. 연구개발비 : 40백만원

마. 자산취득비 : 75백만원

바. 그 밖의 경비 : 8백만원

작성자 : 환경과장 이 덕 기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안 번호	2019-147

제 출 일	2019. 11. 2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공간으로 조성된 거창창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설치 및 위치, 기능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창포원 운영을 정함(안 제7조~제17조, 별표 1)

1) 개원 및 휴원 : 매일 개원, 필요시 임시로 휴원일 지정

2) 운영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3)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 무료, 다만 재료비 등은 실비

4) 입장 및 행위제한

5) 편의안전 확보

6) 창포원 내 회의실, 온실 내 체험실 등 시설의 이용 신청

7) 식물의 수량 등 조정

8)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9) 온실 관리 : 병해충 방제, 온도·습도 유지

라. 편의시설 운영(제18조~제22조, 별표 1~별표 3)

1) 키즈카페 및 북카페 운영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키즈카페 입장료, 다만 북카페는 무료

3) 카페 위생 관리

4) 키즈카페 입장제한 및 퇴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제144조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 931백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31.~11.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2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559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대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되,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임대사업소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소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평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를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망실·”을 “잃어버리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대사업소장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임차인”을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관리요원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결정하여 매년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변동 시에도 같다

제11조제1호 중 “장애인으로서”를 “장애인,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3.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4.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관리요원”을 “군수”로 한다.

제1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1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기존 제3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기존 제4호) 중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기존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기계 임대차 계약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9조제2항 중 “소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장이 임명 또는”을 “군수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2호·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제6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제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기존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제8조의2,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되,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임대사업소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부터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대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대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 3.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장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해야 한다. ④ 군수는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잃어버리거나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관리요원은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	② 군수는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
제9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는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단서 신설>	제9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는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소장이 판단하여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④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종별 임대료는 별표를 기준으로 징수하며, 임대사업이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생 략)	제10조(임대료)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결정하여 매년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변동 시에도 같다. ②~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자가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 2. (생 략)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자가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 2. (현행과 같음)
제12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농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 3.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제12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3.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4.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농기계의 반환) ① (생 략)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농기계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군수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 략) 2. 6개월 제한 가. 제1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6개월 제한 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7조(비치대장) (생 략) 1.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 임대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3.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7조(비치대장) (현행과 같음) <삭 제> 1. 농기계 임대차 계약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대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다만,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거창군 소속 자문위원회이 위원 위촉권은 “군수”에게 있음. 임명은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 용어 ④ (생 략)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대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다만,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0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위원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자	임 차 자				
거창군수	성 명		남 □ 여 □	전화번호	
	주 소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대
부속작업기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 대 료	금 원(\ )			

농기계 운 반	위 탁 운 반				
	출고	장 소	희망시간	거 리	요 금
				킬로미터	원
	입고	장 소	희망시간	거 리	요 금
				킬로미터	원

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농기계관리번호	
작업종류			
작업장소	읍면		
작업면적	제곱미터 (일 평)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한다.
4.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군수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5.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임차인은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자: 거창군수 (인)
임 차 자: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임 차 인			계약 농기계				임대료		작업내역		입 고		결 재		
		주소	성명	성별	기종명	관리번호	계약일자	임대기간	금액(원)	수납확인	작업내용	면 적(제곱미터)	예정일	입고확인	담당자	담당	과장
								~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148

제 출 일	2019. 11. 2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정비함(안 제10조)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결정

2) 결정된 농업기계 임대료 매년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

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11조)

1)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반액 감면

다. 임대료 반환대상 확대(안 제12조)

1) 계약 만료일 전 농업기계 반납 :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라.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중복·재기재 내용 삭제(안 제13조·제17조제1호·제22조제3항)

1) 임대계약 취소, 농기계관리대장, 위원회 수당

마. 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19조)

1) 삭제 :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심의

2)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2019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임대사업 계획의 적합여부만을 심의하도록 전국적 통일기준 마련

바. 그 밖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30.~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2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560호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를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농업기계의 수리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농기계순회 수리반”을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농기계순회수리반”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기계”를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기존 제7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10,000원”을 “3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리 당일”을 “수리한 날”로 한다.

제8조·제10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7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이하 "농기계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농업기계의수리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기계순회 수리반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운영한다.	제2조(설치)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농기계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운영한다.
제3조(업무) ①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 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 3. 농기계 활용지도 ② 삭제(1991. 8. 12)	제3조(업무)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 순회 수리 및 교육 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 3. 농기계 활용지도
제5조(예산) 농기계 훈련 및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농기계 훈련 및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직원)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삭 제>
제7조(부품대금) ①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종별 10,000원 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00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부품대금) ① 농기계 수리에 드는 부품대금이 기종별 30,000원 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30,00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 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부품대금은 순회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수리 당일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 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부품대금은 순회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수리한 날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망실훼손)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장부비치) (생 략)	제7조(장부비치)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제4호서식]

농 기 계 수 리 일 지

년 월 일

담당자	담 당	소 장	결재

수리카드번호	기 종	기 재 번 호	고장부분 및 개 소	수 리 내 용	대 체 부 속	수 리 비		소 유 자		수 리 장 소
						부속대	수수료	주 소	성 명 (남/여)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149

제 출 일	2019. 11. 2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에서 농기계 수리 시에 드는 부품대금의 무상공제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농기계 이용 확대 및 촉진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기계 수리 시 부품의 무상공제 금액 상향조정함(안 제6조)

1) 10,000원 ⇒ 30,000원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함

1) 소요되는 ⇒ 드는, 당일 ⇒ 그 날

2) 각호 ⇒ 각 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30.~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별지 제4호서식)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2월 31일

거창군 조례 제2561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시행규칙”을 “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감면) ① (생 략)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가. 하수도 사용업종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나.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다.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 구분	사용량 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현 행	개 정 안
가정용	1이상~20이하	140	160
	21이상~30이하	190	220
	31이상	250	290
일반용	1이상~30이하	170	200
	31이상~50이하	210	240
	51이상~100이하	250	280
	101이상~300이하	290	330
	301이상	360	420
산업용	1	170	200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150

제 출 일	2019. 11. 2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공공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평균 49.9퍼센트인데 비해 거창군은 5.3퍼센트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임에 따라 공공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공기업 경영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함(안 별표 1)

1) 요금 인상률 : 15퍼센트

2) 요금 현실화율 : 5.3퍼센트 → 5.76퍼센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하수도법」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2) 「지방공기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4.~10.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2월 31일

거창군 규칙 제1275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월 지급한도액)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제3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 군수는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9-92

제출일자	2019. 11. 18.
제 출 자	행정과

1. 제안 이유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월 지급한도액을 정함(안 제2조)

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를 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지방자치법」제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15.~11. 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2월 31일

거창군 규칙 제1276호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3조 조제목 “(임명절차)”를 “(임명·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읍면장이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후”를 “읍장·면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을 “읍장·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4조 중 “추천된 자는”은 “임명된 사람은”으로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읍면장”을 “임용일부터 10일 이내 읍장·면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자격)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로서 당해 행정리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2조(이장자격)**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행정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후 임명한다. ② 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제3조(임명·해임)**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
제4조(명부관리) 이장으로 추천된 자는 명부 관리에 필요한 이력서를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명부관리)** 이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명부 관리에 필요한 이력서를 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읍장・면장에게 제출한다.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9-93

제출일자	2019. 11. 18.
제 출 자	행정과장

1. 개정 이유

이장 임명 시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해임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장 임명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

나. 이장 해임사유 구체화함(안 제3조제2항제2호)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다. 용어 순화 및 정비

1) 순화 : 당해 ⇒ 해당, 자 ⇒ 사람,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2) 정비 : 교체 ⇒ 해임

3) 근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행정안전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24.~11.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2월 31일

거창군 규칙 제1277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세대”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전입대학생”이란 군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3.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세부사업 및 지원기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 사업 및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군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각 사업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용과 지원 기준이 맞는지 확인 후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받아 그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조건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읍·면장과 군수는 신청 및 지원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구증가 세부사업 및 지원기준(제3조 관련)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지원	임신축하 기념품	거창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또는 가임여성	10만원 이내 지원
	임산부 영양제		임신 5개월부터 최대 7개월분 지급
	엽 산 제		가. 임산부는 신청일부터 임신 16주까지 산정하여 지급 나. 가임여성은 5개월분 일괄지급, 임신 때까지 추가 가능
	출 산 축 하 금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부 또는 모	가. 첫째 100만원 나. 둘째 200만원 다. 셋째 이후 250만원
	출 산 장 려 금	셋째 이후 자녀를 군에 출생신고 하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셋째 이후 50만원
영유아 양육 지원	양 육 지 원 금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다만, 전입세대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입한 달부터 지급하되,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가. 첫째, 둘째: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20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나. 셋째 이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30만원 지급 다만, 출생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
	과일퓨레 이유식 지 원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세대로서 부 또는 모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한 세대에 연간 4박스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다자녀 지원	세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세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서,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대상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다만, 고등학교 재학을 위하여 군 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급
전입 지원	전 입 정 착 금	전입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전입세대	가. 1인 세대 10만원(생활관비 또는 학자금 지원자 제외) 나. 2인 세대 20만원 다. 3인 세대 30만원 라. 4인 이상 세대 50만원
	전 입 기 념 품 (축하카드) 발송		2만원 상당의 전입기념 물품 또는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 투 지 원		전입신고 시 한 번, 20리터 45매 이내 다만, 1명 전입 시 22매
	문화예술 관람권 지 원		전입신고 시 1명 한 번, 공연티켓 교환권
	빈 집 정 비 지 원 금 지 원	전입세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다만, 1명 전입 시 150만원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전입고등학생 및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한 번, 10만원
	전입고등학생 및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나.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 재학 중 최대 4학기 지원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대학 생활관으로 전입하는 대학생	학기별 30만원 이내, 재학 중 최대 4학기 지원
그 밖의 지원	국적취득자 지원 보상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군민	1명 50만원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자로 다음의 대상별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 1)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2)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가정 3) 전입세대: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세대	가. 지원 금액: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 대출 잔액 이자의 1.5퍼센트 이내. 다만, 다음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지원 1)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2) 출산가정: 최대 150만원 3) 전입세대: 최대 50만원 나. 지원기간: 연 한 번, 최대 세 번 지원

[별지 제1호서식]

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청서

기 본 현 황						
신청분야	□ 임신·출산, 양육 □ 학자금, 전입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					
출산 양육	□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					
	자녀 성명	생년월일	자녀 수	자녀 성명	생년월일	자녀 수
다자녀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생 학자금 구비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자녀 수	자녀 중 째		신청인과의 관계		
	학자금신청	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				
학자금 전입	전입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전입대학생	학교명			학과명		
	□전입고등학생 장학금 □전입고등학생 학자금 □전입대학생 학자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정착금·기념품 □빈집정비 지원금 □쓰레기종량제봉투 □문화예술 관람권 □전입대학생 장학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대학생 학자금과 생활관비 중복지원 불가 구비서류: 고등학생학자금 납입영수증, 전입대학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자택 : 핸드폰 :	
거창군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신혼부부 해당)				주택소유여부 (√ 체크)	□ 무주택
	출 산 일 (출산가정 해당)					
	전입신고일 (전입세대 해당)					
임차·구입 주택현황	소 재 지				소 유 자	
	임차·구입 금액(원)				임차면적 (제곱미터)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신청금액	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전세자금인 경우) 3. '주택전세·구입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 날인) - 주택전세·구입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구입 주택 등기부등본 1부(구입자금인 경우)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3. 혼인관계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요청 (부부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목적: 청년 주택 전세·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신청인: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나. 신청인: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신청인은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창군이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칸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년 주택 전세·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19-95

제출일자	2019. 11. 19.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제안 이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기준과 필요한 서식·절차를 정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및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3조·별표)

1) 임신출산 지원 : 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2) 영유아 양육 지원 :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

3) 다자녀세대 지원 : 세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4) 전입 지원 : 전입정착금, 전입기념품, 빈집정비, 쓰레기 종량제봉투, 문화예술 관람권, 전입고등학생·전입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5) 그 밖의 지원 : 국적취득자 지원, 청년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나. 신청 및 지원절차를 정함(안 제4조)

1)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 ⇒ 군수가 지원 여부 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2,139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29.~11. 1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2월 31일

거창군 규칙 제1278호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가.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1)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산·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2)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가)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이 경우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계산함 (1) 업무정지일이 총 181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한다)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감점 20점 (2) 업무정지일이 총 91일 이상~18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5점 (3) 업무정지일이 총 31일 이상~9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0점 (4)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나)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1)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종사자 한 명당 감점 5점 (2)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종사자 한 명당 감점 10점	20
	나. 급여제공 이력 1)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업·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현지조사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등을 말한다) 2)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가) 공통기준: 휴업·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일 것 나) 세부기준 (1) 휴업·폐업 이력이 세 번 이상인 경우: 감점 15점 (2) 휴업·폐업 이력이 두 번 이상인 경우: 감점 10점 (3) 휴업·폐업 이력이 한 번 이상인 경우: 감점 5점	15
	다.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라.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마.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1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가.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나.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연 한 번 이상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다.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15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가.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 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나.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다.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라.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1)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2)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마.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1) 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2)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등	20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나.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다.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라.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포상, 휴가 제도 등 마. 시설장 및 종사자를 공개모집하는 등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바.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직원의 건강검진, 연 한 번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 및 조치계획 등 아.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15
5. 그 밖의 가 점 부 여 사항(15점)	가. 생활시설, 주간·야간·단기보호 시설에 해당할 경우(10점) 1)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1층 시설로 운영(5점) 2) 시설 안전을 위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전문직(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고용 (5점) 나. 방문목욕(5점) 1) 목욕차량 구비	15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의안 번호	2019-107

제출연월일	2019. 12. 24.
제 출 자	행복나눔과장

1. 제안 이유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있어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정심사제로 변경하는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심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위임에 따른 위임규칙

나. 위원회 설치 근거를 둠(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3조~제12조)

1) 구성 : 장기요양보험업무 담당 부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3급 이상 직원,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등 5명 이내

2) 임기 : 2년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 직무 및 직무대행을 정함

4) 회의, 심사·의결을 정함

5) 의견청취, 간사, 운영세칙을 정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을 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2. 11.~12.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보건복지부 표준안(법제처 컨설팅) 전부 반영

거창군 고시 제2019 - 14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1.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당산말길 94 등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16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675-6	2009-12-28	2020-01-01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287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당산말길 94	2009-04-01	2020-01-01	당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거창군 고시 제 2019 - 149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과수원 조성(사과 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		사 업 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고제면 봉산리 산261-5	12,496㎡	4,943㎡	15,631천원	▶당초 : 2017. 8. 9. ~ 2018. 8. 8. ▶변경 : 2017. 8. 9. ~ 2020. 12. 31.	경남 거창군 고제면 와룡길 82-6	변 상 원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9년 12월 31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고시 제 2019 - 150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과수원 조성(사과 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		사 업 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거창읍 장팔리 산316-1	6,710㎡	4,691㎡	13,800천원	▶ 당초 : 2018. 2. 9. ~ 2019. 12. 31. ▶ 변경 : 2018. 2. 9. ~ 2020. 1. 3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1길 14, 606 (삼아아파트)	권 영 진
거창읍 장팔리 산316-9	6,940㎡	3,519㎡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9년 12월 31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19 - 1612호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사항 공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거 창 군 수

■ 위탁사무명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 관리

■ 위 · 수탁자

○ 위 탁 자 : 거창군수

○ 수 탁 자

수 탁 자	대표자	소재지	비고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거창지회	조성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96-11	

■ 위탁운영 개요

○ 시 설 명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94번지, 394-3번지

○ 부지면적 : 5,863㎡

○ 시 설 물 : 관리동 1동(1층, 99.75㎡)

※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화장실, CCTV 등

○ 위탁기간 : 2019. 12. 26. ~ 2021. 12. 25. (2년간)

○ 위・수탁사무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 시설물 등의 선량한 관리 및 보수・유지
- 화재, 도난 등 재난 예방 조치
- 공영주기장 운영, 이용자,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등

■ 기타문의

○ 거창군 건설과(☎055-940-3534)

거창군 공고 제2019 - 1613호

『연곡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연곡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0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연곡소하천 정비공사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연곡마을 일원

다. 사 업 내 용 : 하천정비 L=526m, B=4~10m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 하천담당)

2. 보상내용

가. 토 지 : 경남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일원(붙임참조)

나. 지 장 물 : 편입토지에 지상에 있는 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055-940-3644)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055-940-36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붙임 편입용지조서(연곡소하천 정비공사) 1부. 끝.

이 의 신 청 서

사 업 명	연곡소하천 정비공사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 소	
사 업 시 행 자	성 명 (명 칭)	거창군수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거창군청)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열람에 따른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공고 제 2019 - 1619호

2019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원 채용 공고

거창군청에서는 2019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12. 30.

거창군청 산림과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채용구분	인원	구분	계 약 기 간		비고
도 급 조사원	3명	도급 계약	2020. 1. 14. ~ 3. 13. * '20. 1. 14.(화) 교육 참석	(약 60일)	※ 업무량 및 조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됨 ※ 교육참가비 68,800원 별도 지급 예정

※ "조사대상 임가수에 따라 채용기간 및 채용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조사원은 도급조사원 결원 시 동일조건으로 우선 채용

□ 도급조사원 실적급 지급기준

- 조사원 등에 대한 도급금액(또는 임금)은 채용기간 중 조사표당 단가 및 조사대상 가구수 등에 따라 계상하여 지급
- 조사수당 지급

조사표	8,500원/ 1개 조사표당(조사완료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양호로 판단될 경우만 지급
전화비	조사대상 1가구당 356원 지급
교육수당	교육참석 1일에 68,800원 지급 ※ 교육 참석 시 소요되는 운임비 별도 지급

※ 불성실 조사표, 사용불가 조사표 지급기준은 도급계약서 참고

2. 담당업무

담당업무	주요담당업무
도급 조사원	▪ 임산물 품목별 생산임가 확인 ▪ 조사기간 중 임산물 품목별 임가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및 내용검토 ▪ 조사 진도를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 작성된 조사표를 내용검토 후 조사표를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 전산입력 및 내검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조사표는 재확인 및 수정보완

3.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응시 자격요건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조사 체계의 통계조사 유경험자 우대

※ 취업지원 가점부여 : 저소득층,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5. 심사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0. 1. 3.(금)

○ 면접일시 : 2020. 1. 3.(금) (필요에 따라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 6.(월)

-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12. 30.(월) ~ 1. 2.(목) / 4일간

○ 접 수 처 : 거창군청 산림과(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접수방법 : 방문·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평일 9시~18시 내에 접수가능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붙임서식 참조)

○ 도급조사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최종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감액 및 향후 2년간 계약을 제한함

〈서식 1〉

거창군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 응시원서

응시분야	2019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사 진 (3cm x 4cm)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 - - , 휴대폰 : - -		
	주 소			
	e-mail			

최종학력	(학교, 대학원) 학과(졸업, 수료, 재학, 중퇴)

	구분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내용
경력사항	채용분야	~		
		~		
		~		
	기타	~		
		~		

	구분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시행처
자격사항	채용분야				
	기타				

취업지원	저소득층 □ 다자녀보육가구 □ 북한이탈주민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주 1」 채용분야『관련학과 전공』및『관련 자격증』의 범위는 채용공고를 참고하여 기재

2」불성실 또는 허위기재한 경우 채용취소 및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지급보수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서식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거창군수 귀중

본인은 귀 기관에 지원 및 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거창군청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급계약 결정과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인사업무, 도급조사비 산정과 지급, 경력/자격의 조회 및 채용이력관리, 신원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메일 등 연락처, 학력 및 자격사항, 가족사항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각종 사고관련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입사 지원자의 경우 지원서(이력서 등) 접수일로부터 3개월(미 채용시 파기)

○ 계약 종료된 경우 종료한 날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기재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도급계약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거창군 공고 제2019-1620호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공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선정된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거 창 군 수

□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 의결일시 : 12. 24.(화)

○ 내 용 :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결과

위탁대상	선정 결과		위탁기간	비고
	접수번호	성 명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1	거창군 테니스협회	3년	

거창군 공고 제2019 - 1624호

거창군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임대료 공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및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 거창군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12. 31.

거 창 군 수

○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비고
1) 1,000천원 미만	7,000원	
2) 1,000 ~ 2,000천원 미만	8,000원	
3) 2,000 ~ 3,000천원 미만	10,000원	
4) 3,000 ~ 4,000천원 미만	13,000원	
5) 4,000 ~ 5,000천원 미만	16,000원	
6) 5,000 ~ 6,000천원 미만	19,000원	
7) 6,000 ~ 7,000천원 미만	22,000원	
8) 7,000 ~ 8,000천원 미만	25,000원	
9) 8,000 ~ 9,000천원 미만	28,000원	
10) 9,000 ~ 10,000천원 미만	32,000원	
11) 10,000 ~ 15,000천원 미만	42,000원	
12) 15,000 ~ 20,000천원 미만	55,000원	
13) 20,000 ~ 25,000천원 미만	71,000원	
14) 25,000 ~ 30,000천원 미만	84,000원	
15) 30,000 ~ 35,000천원 미만	100,000원	
16) 35,000 ~ 40,000천원 미만	120,000원	
17) 40,000 ~ 45,000천원 미만	126,000원	
18) 50,000천원 이상	136,000원	
	콩 정선 작업1,000원/40kg(포)	

○ 기타사항

- 공고내용과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55-940-8210)에 문의하시거나 거창군 홈페이지(hpp://.geochang.go.kr)현행자치법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 2019 - 16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고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직권말소,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31. ~ 2020. 1. 31.
3. 공고대상 : 64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19년 12월 31일

거 창 군 수

별도붙임 검사 안내문 및 고지서 등 반송 내역 1부. 끝.

거창군 공고 제2020 - 2호

공 고

□ 제 목 : 토석(토사)채취 허가 신청 주민 공람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산147번지 토석(토사)채취 허가 신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합니다.

○ 토석(토사)채취 허가 신청내용

신 청 지					신청사항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지목	계	채취장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완충구역	
계			126,248		29,418	22,521	0	795	0	6,102	
신원	대현	산147	126,248	임	29,418	22,521	0	795	0	6,102	

○ 토석채취신청기간 : 2020.1.2.~ 2021.12.30(2년간)

○ 채취용도 : 토목용

○ 채 취 량 : 174,432㎥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 주민의견 제시기간 및 방법

- 토석(토사)채취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만료일까지 거창군청 산림과 또는 신원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2.

거 창 군 수

거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18호

2019년도 제4회 거창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9년도 제4회 거창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26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 고
거창사건사업소	국화재배	지방농업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

소 속	임용등급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거창사건 사업소	지방농업 주사보 (일반임기제)	국화재배	▸ **일반요건**(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원예, 화훼, 양묘 등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다. 직무내용

근무 부서	임용예정 분 야	임 용 예정등급	인원	직 무 내 용
거창사건 사업소	국화재배	지방농업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 국화재배(모형작, 분재, 대국, 현애국, 소국 등) 전반 ○ 국화재배 인부사역 및 관리 ○ 국화 양묘장 시설 종합관리 ○ 국화전시회 출품작 생산관리 ○ 국화전시회 연출 기획 및 준비 ○ 그 밖에 지시받은 사항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4. 임용 기간 및 근무시간

○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5. 보수 수준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60,139	42,713

※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0. 1. 9. ~ 1. 13.(3일간) ※ 기간 중 업무시간 내(09:00~18:00 (토·일 제외)	2020.1.14.(화)	2020.1.20.(월)	2019.1.21.(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business)에 게시**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우편접수 시 거창군 행정과 사전연락 바람 (055-940-3172)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거창군청 내 민원소통과 판매)
  - ▸ 7급 7,000원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 우편접수시 거창군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거창군홈페이지 취업정보 시험채용정보에 게시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마.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바.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사.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아.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자.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행정담당 ☎055-94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람.

아.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자.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행정담당 ☎055-94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람.

응 시 원 서

본인은 (2019년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거창군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지방농업주사보 (국화재배)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㊀)			※거창군 수입증지 날인 5,000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2019년도 제3회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19년 월 일 거창군 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거창군 수입증지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증지 날인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19. . . 작 성 자 : (인)		

직무수행계획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19. . . 작 성 자 : (인)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포함)

성　　명		임용분야	
생년월일	.　.　.		

본인은 거창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동 위원회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과 임용 절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시험 전형 자료,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서명)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1. 이용기관 명칭 :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